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8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김상훈·고동진·김승수

김소희・김선교・조 국

신동욱 • 권영진 • 장동혁

송언석 · 이달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분쟁조정사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으로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 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6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 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24조의5(조정 등) ①・② (생 | 제24조의5(조정 등) ①・② (현행 | | |
| 략) | 과 같음) | | |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 | ③ | | |
|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 | |
|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 |
| <u><후단 신설></u> |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 | | |
| | <u>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u> | | |
| | 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 | | |
| | 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 | |
| | <u>한다.</u> |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
|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 | 3 | | |
| 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2항에 | | | |
|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 | | |
|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u>경우</u> | <u>경우.</u> | | |
| <단서 신설>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 | |
| |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 | |
| |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 | |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u>분쟁조정</u> | ⑥ <u>조정절차</u> | | |
| <u>사항</u> 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 |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 | | |
| 료될 때까지는 해당 분쟁의 당 | 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 | | |

| 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 |
|-------------------|
| 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 |
| 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 |
| 정권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
| 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 |
| 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
|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③ (생 략)

④ <u>공정거래위원회는</u>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 , |
|--------------------|
| |
| |
| |
|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
|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
|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 |
| 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 |
| <u>에 대하여</u> |
| |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